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채용 공고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항만 지원, 선사 경영개선, 유관산업과의 상생 등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이끌어 주실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Ⅰ. 채용내용

구분		직급	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일반직	경력직	4급(과장)	감사/법무	1명	부산
			시장분석 및 산업지원	2명	
			리스크관리	1명	
		5급(대리)	경영관리	2명	
			사업관리(금융·해운항만)	3명	
			정보통신(IT)	1명	
			기록물관리	1명	
	신입직	6급(사원)	일반(공통)	7명	
			보훈(취업지원대상자)	5명	
합계				23명	

채용방법	가. 개인정보 등의 차별적 요소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 나. 제한경쟁에 의한 채용(응시자격 일부제한)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Ⅱ.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응시자격 (붙임1)

ㅇ 성별·연령별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응시가능

가.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가 가능한 자
(단, 경력직의 경우 최종발표 후 최대 4주 내 입사가 가능한 자)

□ 응시자격기준 (붙임2 및 붙임3)

ㅇ (경력직) 지원분야 응시자격기준 이상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 (신입직)

가. 공통 : 경력 무관하며, 일정 수준의 어학(영어)능력 보유자

나. 보훈 :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우대사항(입사지원서 접수 시 기준) (붙임4 및 붙임5)

ㅇ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가점 부여)

Ⅲ.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채용공고기간 : 2020. 5. 27.(수) ~ 6. 10.(수) 18:00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원서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요망

□ 관련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해당자에 한함)

구 분	항 목	제출부수	대상자
1차면접 시 제출	자격(면허)증	1부(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1부(원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예정), 재학(휴학, 제적) 증명서		
	교육사항 증빙서류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1부(원본)	
	교육사항 증빙서류 - 직업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1부(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검증)	1부(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합격 시 제출	기본증명서(상세)		모든 모집분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신원진술서(약식)		
	채용신체검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 이후에라도 합격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시기 및 방법**

- 1차 면접 심사 당일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Ⅳ. 전형절차 등

□ 전형절차

입사지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1차, 2차)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최종발표

□ 세부일정

구분	일시	비고
채용공고	5.27~6.10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6.11~6.22	·적격심사 및 입사지원서 심사
서류전형 합격발표	6.23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 선발</u>
필기전형 (장소:서울,부산)	6.28	·(경력직)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입직)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필기전형 합격발표	7.03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u>
1차 면접전형 (장소:부산)	7.08~7.10	·인성 및 직무능력 심층면접 ·장소 : 공사 회의실(부산)
1차 면접전형 합격발표	7.17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u>
2차 면접전형 (장소:부산)	7.22~7.23	·인성 및 직무능력 심층면접 ·장소 : 공사 회의실(부산)
2차 면접전형 합격발표	7.30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u>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u>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7.31~8.17	·신원조회 및 채용검진 진행 후 최종발표
최종발표	8.18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변동 시 사전에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ㅇ 서류전형

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을 야기하는 항목을 배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심사

나. 해당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서류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 선발**

다.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라.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ㅇ 필기전형

가.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성

구분	시험과목 (반영비율)	주요 내용	문항
공통	인성검사	ㅇ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P/F)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적부판단	210
신입직	직업기초 능력평가 (40%)	ㅇ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50
	직무수행 능력평가 (60%)	ㅇ 입사지원서 상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선택 ㅇ 응시과목 : 재무관리, 경영학, 경제학, 법학, 통계학 ㅇ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예정이며, 객관식 문항 출제 (법학: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한함, 경영학:회계 및 국제분야 포함)	50
경력직	직업기초 능력평가 (100%)	ㅇ 응시분야별 직무기술서_직업기초능력 참조	50

※ 과락기준 : 인성검사(P/F),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각 40점 미만

나. 인성검사를 합격하고 각 시험과목의 40점 이상을 득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단, 신입직의 경우 표준점수 적용 후 고득점자 순으로 10배수 선발

다.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면접전형** : 1차는 실무면접, 2차는 심층면접으로 진행

가. 1차 면접전형

1) 특정주제 발표에 대해서 외부위원과 공사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논리성, 합리성 등을 평가 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1차면접 점수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필기전형, 서류전형 점수 순으로 선발

3) 1차 면접전형 심사기준

구분	면접유형	평가내용	과락기준
4~5급	발표 면접	직무역량 (직무수행전문성 및 계획)	합산점수 60점 미만
		문제해결 (직무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조직이해 (공사이해도 및 조직적합도)	

구분	면접유형	평가내용	과락기준
6급	발표 면접	직무역량	합산점수 60점 미만
		문제해결	
		의사소통	

나. 2차 면접전형

1) 외부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초능력 및 인성, 태도, 자질 등에 대해 평가 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2) 합격 최저점에 2차 면접점수 동점자가 있는 경우 1차면접, 필기전형, 서류전형 점수 순으로 선발

3) 2차 면접전형 심사기준

평가내용	과락기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합산점수 60점 미만
의사발표의 논리성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ㅇ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 : 채용검진 실시 나. 신원조회 : 관계법령에 의한 적부평가

ㅇ 예비합격자 운영

1) 입사 포기 또는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습기간 중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해당사유 발생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예정 2) 2차면접 전형 불합격자 중 합격기준 점수 이상을 대상으로 경력직은 각 분야별 최대 2배수, 신입직은 1배수까지 예비합격자로 선정

Ⅴ.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이의신청 안내

ㅇ 목적 : 전형 간 불합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ㅇ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Q&A게시판, 콜센터
ㅇ 이의신청 처리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개별회신

<예외사유> 가.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나.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다.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서류 반환안내 (붙임6)

ㅇ 온라인상 제출된 경우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1차 면접전형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 대상자 : 1차 면접전형 응시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차 면접전형 결과 발표 이후 14일 ~ 180일 내 신청
2) 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채용사이트 :)

ㅇ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파기

Ⅵ.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진행됩니다.

ㅇ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사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입직의 일반(공통),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목표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자료 및 경력 허위 기재자, 부당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직급별 응시자격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공사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직급 및 경력을 결정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전형 종료 후 채용 홈페이지상의 안내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우리 공사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사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제출서류와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경력산정 시 지원서 상 기재하여 검증된 내용 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 등의 사유로 명확한 근거가 있을 시 검토 후 최종 경력을 산정함)

ㅇ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개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안내

가.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나.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다.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내용의 작성금지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마. 제출된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붙임1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

붙임2 응시자격기준

직급 (직위)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4급 (과장)	감사/법무 시장분석 및 산업지원 리스크관리 사업관리 (금융·해운항만)	총 환산경력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5급 (대리)	경영관리 사업관리 (금융·해운항만) 정보통신(IT)	총 환산경력 4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기록물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총 환산경력 4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3년 이상) 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1)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6급 (사원)	일반 (공통)	경력 무관. 단, 어학능력이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TOEIC 700점 이상, TEPS 555점 이상, TOEFL iBT 79점 이상, TOEIC-S 120점, IELTS 5.5 이상, 오픽 IM2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나.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일반(공통)과 동일기준 적용)

※ 총 환산경력 :「공사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산정 후 경력 (붙임3 참조)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어학능력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조회 또는 확인이 가능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함

- 어학성적은 지원자격 확인 및 전형 평가요소로만 활용하며, 이후 전형단계에서는 미반영
- 국외 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함
- 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TOEIC, TEPS에 한하여 채용공고 전 사전제출된 어학성적(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20. 1. 01.~ 4. 09. 기간 중 만료된 어학성적에 대하여 별도 인정함

※ 6급(사원) 지원자의 경우 경력 및 학위경력(석사 및 박사)을 별도 인정하지 않음

※ 관련 분야 박사학위는 3년, 석사학위는 1년 근무경력 인정

1) 재직 중 학위취득은 제외(중복 불인정)

2) 관련분야(하기내용 외 학위경력 미인정)

- 경제, 금융, 경영, 행정, 법학 및 각 대학이 별도로 인정하는 해운·항만 물류분야 등 공사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말함
- 단, IT 관련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학위자는 해당 분야 지원 시 추가 학위경력 인정
  (IT 관련 학위자 - 정보통신(IT) 직무분야, 기록물 관리 관련 학위자 - 기록물관리 분야)

붙임3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환산율	경력 내용
제1호	100%	1.「국가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우리공사 근무기간 4. 필요에 의해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 채용할 경우, 해당 자격증의 대표 직종에 종사한 근무기간
제2호	90%	제1호 외의 법인 또는 각종단체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3호	50%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근무 경력
기타	100%	1. 박사학위 3년 근무경력 인정(공사 직무 관련분야 학위 한정) 2. 석사학위 1년 근무경력 인정(공사 직무 관련분야 학위 한정)

가. 각종 경력환산에서 같은 환산요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일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력기간의 산정은 해당 월의 15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 공사 직무 관련분야 학위란 경제, 금융, 경영, 행정, 법학 및 각 대학이 별도로 인정하는 해운·항만 물류분야 등 공사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말한다.

- 단, IT 관련 및 기록물 관리 학위자는 해당 분야의 직무분야를 지원할 경우 학위경력을 인정함 (IT 관련 학위자 - 정보통신(IT) 직무분야, 기록물 관리 관련 학위자 - 기록물관리 분야)

라. 법인 또는 각종단체의 파산·해체 등 제반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마. 증빙서류 제출 시 국외에서의 경력도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 시 적용하며,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전 경력을 별도 인정하며, 신규입사자부터 본 경력환산기준을 따른다.

아. 사장은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상기 기준표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자. 상기표는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4 우대사항

구분	대상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3%	5%	10%	3%	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 등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등록 장애인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비수도권 대학졸업 (휴학,재학)	○					
전문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불필요, 자격증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CFA, FRM(GARP), 세무사, 보험계리사	국내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 유의사항

가. 위 가점은 가점 대상자(서류전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필기전형), 총점 40% 이상(면접전형)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하며, 상기 대상자일 경우 전문 자격증과 중복적용 가능 (단, 전문 자격증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인정)

다.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지역인재 가점은 신입직 채용에만 해당

마.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적용 비율과 보훈번호 등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가점 적용 및 지원 자격 검토에서 제외됨

붙임5 비수도권 지역인재 판단기준

□ 적용대상

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가점대상대학)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본인이 비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인재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채용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채용담당자의 확답을 받은 이후 접수 절차 진행 필요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요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